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9. 15(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8. 08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4. 8. 08

라. 상정일자 : 2014. 9. 03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 검토보고 :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현재 인천시립도서관을 위탁·운영하기 위해 (사)인천광역시도서관 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한국도서관협회와의 명칭이 유사해 일반인이 한국도서관협회의 산하기관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도 명칭의 변경을 요청해 음에 따라, (사)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의 명칭을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으로 변경함(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3월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설립된 ‘(사)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설립당시 시립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대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만들고자 발의 되어 수봉·영종·율목 도서관 및 중구 구립꿈벗도서관을 수탁운영 해왔음.
- ‘(사)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는 설립당시부터 시립공공도서관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협회설립을 통한 위탁운영(시 집행부 입장)과 시 직영운영(시민단체 입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협회를 설립하여 위탁운영 하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사)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조직도



- 그러나, (사)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의 명칭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한국도서관협회¹⁾의 명칭과 유사하여 일반인이 한국도서관협회의 산하기관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도 명칭의 변경을 요청하여 (사)인천광역시 도서관협회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1)(사)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법」 제17조(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설립)에 의거 1945년 설립(설립당시 조선도서관협회)된 도서관연합체로 도서관 상호간의 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 협력, 도서관 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사단법인 이면서 국고보조금 수혜기관(법정단체)임. 각 시·도별 지구협의회를 두어 지역회원을 지원하고 있음.(현재 광주·전남 지구협의회, 대구·경북 지구협의회, 부산·울산·경남지구협의회 3개의 지구협의회가 있음)

□ 주요내용

1) “(사)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명칭을 “(사)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으로 변경(안 제15조 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4장 <u>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u>	제4장 <u>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u>
제15조(설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육성·진흥을 위하여 사단법인 <u>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u> (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설립) ① ----- ----- ----- <u>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u>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
② <u>협회는</u>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u>진흥원은</u> ----- -----.

- 개정안은 현행의 (사)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의 명칭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한국도서관협회의 명칭과 유사하여 일반인이 한국도서관협회의 산하 기관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도 명칭의 변경을 요청해 오는 등 인천광역시 산하 단체로서 정체성 확립 및 발전적 비전 제시를 위하여 그 명칭을 “(사)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 사료됨.

2)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조항 및 조문 정비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은 용어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명확화 등의 기준에 따라 어순 바로잡기 등을 기준으로 모든 현행 법률을 알기 쉬운 법률로 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항 및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진흥원 명칭 쓰는 타시도는 있는지 여부?

- 현재 타시도의 경우 도서관발전진흥원 명칭 쓰는 곳 없음

○ 재산권 주체 변경여부와 소모적 비용 발생 여부?

- 재산권 주체의 변경은 없으며, 소모적 비용 역시 우려할 만한 수준의 비용발생사항은 없음.

○ 공무원 겸직 가능 여부?

- 비영리 법인 비상근 이사는 가능함. 법률자문 내용 역시 같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겸직하지는 않음.

○ 공무원행동강령에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임원 가능여부?

- 정확한 규정은 없으나,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토록은 규정됨.

○ 공공성의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등의 사유로 사단법인 비영리 법인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 나름의 최대 접점을 찾아 운영하는 것임.

○ 선례가 될 수 있음. 현재도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회 등 계속 만들고 있지 않는지?

- 현재 문화재과에서 추진중이며, 법률적 검토는 다 받아두었음.

○ 명칭변경으로 직제변경사항은?

- 명칭만 바뀌는 것임. 다른건 바뀌는 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찬성 : 7명

(이한구 · 박영애 · 장현근 · 공병건 · 임정빈 · 조계자 · 황홍구 의원)

○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8. 기타사항

- 부대의견 : 사단법인의 적정성 여부 재검토 채택

붙임 : 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제4호의 규정”을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24조의 규정”을 “법 제24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많은 자”를 “많은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하되, 1차에 한하여”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새로이”를 “새로”로, “전임자”를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14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를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을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는”을 “진흥원은”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는”을 “진흥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 중 “협회”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협회는”을 “진흥원은”으로, “7인 이상 15인”을 “7명 이상 15명”으로 한다.

제18조 중 “협회”를 “진흥원”으로,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협회는”을 “진흥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를 “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를 “진흥원”으로, “준용하되”를 “준용하며”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중 “협회”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22조 중 “협회가”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협회”를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를”을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
다만, 제1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료실: 09시부터 18시까지
2. 열람실: 06시부터 22시까지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주자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제28조제3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소지한 자”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의 규정”을 “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하되, 1차에 한하여”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32조제8호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34조제3항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으로 본다.